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	452	-
---	-----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2018. 8. 3.】 【일부개정 2021. 3. 19.】 【일부개정 2021. 3. 31.】 【일부개정 2022. 9. 21.】 【일부개정 2023. 1.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복지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원칙, 운영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단 임·직원의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①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단의 임·직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단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단직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이며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 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 10.〉
- 3. "필수기본항목"이라 함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하는 항목으로서 단체보험가입을 말한다. 〈신설 2023. 1. 10.〉
- 4. "선택기본항목"라 함은 이사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서 임·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것으로서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다. 〈신설 2023. 1, 10.〉

- 5. "자율항목"이라 함은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3. 1. 10.〉
- 6. "포인트"라 함은 선택적 복지 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1포인트는 1 천원의 선택적 복리비와 동일하다. 〈개정 2023. 1. 10.〉
- 7. "기본포인트"라 함은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개정 2023. 1. 10.〉
- 8. "추가포인트"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하고, 그 종류에는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가 있다. 〈개정 2023. 1. 10.〉

제2장 종류 및 배정기준

- 제4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종류) 공단에서 시행하는 선택적 복제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복지포인트 지급
 - 2. 단체보험 가입
 - 3. 건강검진비 지원
 - 4. 출산장려금 지원
- 제5조(적용대상)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천 시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이 사천시로부터 동일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경우 는 제외한다. 〈개정 2022. 9. 21.〉
 - 1. 복지포인트 지급은 임원(비상임 이사 제외), 일반직, 공무직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한다.
 - 2. 단체보험 가입은 임원(비상임 이사 제외),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3. 건강검진 지원비는 임원(비상임 이사 제외),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4. 출산장려금 지원비는 임원(비상임 이사 제외), 일반직,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6조(복지포인트 배정기준) ① 매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 1. 기본포인트 : 대상자 전원에게 8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 2. 근속포인트 : 근속기간 1년당 10포인트로 하되, 최고 20년 이상 200포인 트까지 배정한다.
 - 3. 가족포인트 : 배우자는 100포인트, 그 외 부양가족은 1인당 50포인트씩으로 하되, 최고 2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기간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를 말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6조의 부양가족을 말한다.
 - ③ 개인별 포인트는 설계일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확정되며, 설계일 익일이후 발생하는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등 추가포인트는 가산되지 않는다.
- 제7조(포인트 적용기간) ① 복지포인트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 ② 전출·해외파견·정직·휴직·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되며, 다만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 3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질병휴직과 동 규정 제39조제5호에 따른 육아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③ 전출, 퇴직, 해외 파견자와 질병휴직·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자와 연도 중입사한 자는 월할 산정한다.
 - ④ 월할 산정 시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전입·복직·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지급한다.
- 제8조(이월의 금지) 당해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제3장 포인트 사용 및 정산

제9조(선택적 복지제도의 항목) 삭제 〈개정 2023. 1. 10.〉

제10조(기본항목) 삭제 〈개정 2023. 1. 10.〉

제11조(자율항목) 삭제 〈개정 2023. 1. 10.〉

- 제12조(복지포인트 관리업무 위탁) 복지포인트 관리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포인트 사용 및 정산) ① 선택적 복지 제도에 의하여 복지항목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는 임·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신용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익월 5일까지 복지 담당자에게 카드 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 담당자는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복지포인트가 정당하게 사용된 경우에 당월 20일까지 해당 금액을 개인별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 ② 복지포인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않고 수탁업체 와 협약된 내용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정산할 수 있다.

제4장 단체보험 가입 등

- 제14조(단체보험 가입) 공단은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매년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자 중 단체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100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개정 2023. 1. 10.〉
- 제15조(건강검진비 지원) ① 임·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출생년도별 격년 제로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 ② 지원 신청자는 건강검진 영수증과 함께 건강검진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출산장려금 지원) ① 임·직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자녀당 100,000원으로 한다.
 - ② 지원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5장 선택적 복지 운영위원회

- 제17조(선택적 복지 운영위원회) ① 선택적 복지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지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한다.
 - 1.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 2. 복리후생에 관한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기타 이사장이 제도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시 관리부장)로 하고, 위원은 각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3. 19.〉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제4호까지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⑤ ~ ⑪ (생 략)

부 칙 (2023. 1. 1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